

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(3차)

-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* 천톤이상&CMR(~'21년), 100~천톤(~'24년), 10~100톤(~'27년), 1~10톤(~'30년)

-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“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(1차) '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, (2차) '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 정보 조기확보 물질 (3차) '23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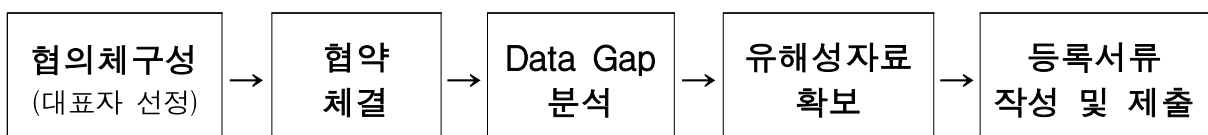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(지원대상)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
 - '24~'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(연간 제조·수입량 1톤 이상~1,000톤 미만)
 -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(Active)이 중소·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,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
 - 협의체 구성,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

□ 지원내용

-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
 - 협의체 구성(대표자 선정)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

< 공동등록 이행 절차 >



○ 세부 지원내용

① 등록 컨설팅

- 협의체 구성·운영,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, 시험자료 확보 방안, 용도조사, CSR자료 작성, 등록서류 작성 등

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(기업생산방식 지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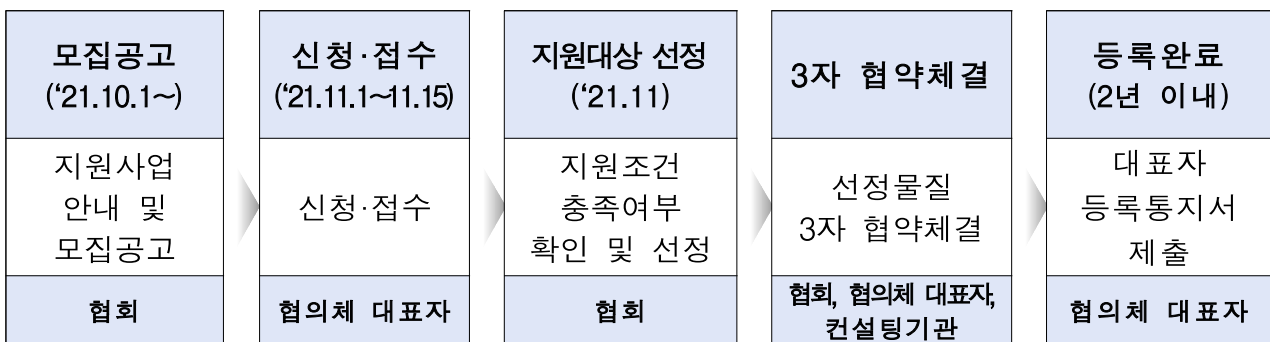
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

※ 단,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,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

□ 운영절차

○ (담당기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○ 운영절차



유의사항

- 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함
- ③ 선정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기업생산방식으로만 지원하며, 세부사항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공고에 따름
- ④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되며,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,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
(※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)

□ 신청 및 대상선정

- (신청기간) '21.11.1(월) ~ '21.11.15(월) 18:00
- (신청대상) 협의회 대표자
- (신청방법)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(sbm.kcma.or.kr)을 통해 신청
- 신청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(신청시스템 내 작성)	붙임 1
2	협의회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	붙임 2
3	협의회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기업·중견기업 확인서	정부기관 발급본
4	컨설팅 계약서(협의회-컨설팅기관)	선정 이전까지 제출

- (선정방법)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
 - 지원조건, 지원예산 규모,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※ (평가기준) 중소기업 비율, 중소기업 수, 최대톤수 비율, 제조업체 비율 등
- (선정결과) 11월 중 홈페이지* 게시
 - 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www.kcma.or.kr), 산업계 도움센터(www.chemnavi.or.kr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

□ 확인사항

-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
-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
-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

-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(~12월 2주차)

협약서 반영사항

- ① 이 물질은 환경부가 발주하고 협회가 수행하는 「등록 전과정 지원사업」의 지원을 받는 물질에 해당함
- ②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
- ③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(공동 작성한 위해성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)
- ④ 등록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에서 제외함
- 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및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제외함
- ⑥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 서류로 사용하여야 함

-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담당기관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한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*해야 함(컨설팅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여야 함)
*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 “컨설팅기관 등록”에 신청
-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
□ 문의처

담당기관	연락처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	02-3019-6759

- ※ 붙임 : 1. 지원신청서 1부.
2.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.

등록 전과정 지원 신청서				
신청인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담당자/전화번호		e-mail	
	주소			
협업체 대표자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(주소)			
	대표자(성명)		기업규모	대/중견/중/소
	담당자명		담당자연락처 (e-mail)	
	담당자연락처 (회사전화번호)		담당자연락처 (H.P.)	
물질정보	고유번호		CAS No.	
	화학물질명		협업체 내 등록최대톤수	
컨설팅 기관정보	컨설팅기관 계약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컨설팅기관명	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- 수집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회사명, 주소, e-mail 등
-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
-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000물질(고유번호; , CAS번호;) 협업체 대표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「등록 전과정 지원사업」에 참여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

붙임2

협업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

협업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

신청인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담당자/전화번호		e-mail	
	주소			

연번	상호명	사업자번호	대표자 (성명)	담당 자명	담당자 연락처	등록 톤수	선임 여부 (O/X)	동의 여부 (O/X)	기업규모 (대/중견/ 중/소)	중소·중견 기업확인서 유효기간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15										

위와 같이 000물질(고유번호; , CAS번호;) 협업체의 적극적 구성원은 「등록 전과정 지원사업」 신청에 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